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라 한다)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창조융합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 본 협약은 각 기관이 상호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콘텐츠분야의 청년 창업과 취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력분야)

-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청년위원회는 대학 및 청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청년 창직·창업·취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위원회의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에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융합콘텐츠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3. 문화창조융합센터는 청년위원회의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에게 문화콘텐츠 전문가의 멘토링을 제공하고 성공사례 등을 각 기관과 공유한다.
  4. 전국 콘텐츠코리아랩은 콘텐츠코리아랩 인프라 제공 및 청년 창업 프로그램, 성공사례 등을 각 기관과 공유한다.
  5. 협약 체결기관은 청년들이 문화창조융합 콘텐츠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분야로 창직·창업·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6. 1호~5호의 협력은 청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청년위원회의 청년 진로 멘토링 사업인 ‘청년, 문화창조융합캠프’ 사업 협력을 우선 추진한다.

## 제3조 (실무협약)

- 각 기관은 원활한 공동 협력을 위하여 실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상호 업무상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

## 제4조 (성실이행)

- 각 체결기관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5조 (기타사항)

- 본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구체적인 실천사항, 업무일정, 효력기간 등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 시행한다.

2016년 3월 3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박용호

박용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김종덕

문화창조융합센터  
센터장 강명신

강명신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박헌용

박헌용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김준한

김준한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양유길

양유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서태건

서태건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 김상룡

김상룡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원장 이신후

이신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송성각

송성각